

#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533
-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찬성자 17명)
- 발 의 일 : 2019년 3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4월 1일

## 2. 제안이유

-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잘못된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과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이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을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안제12조제1호).
- 다. 잘못된 인용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제3호, 안 제22조제1항).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5조제3항, 안 제18조제1항제1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4.8.~2019. 4. 15)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동 개정안의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심신장애’ ⇒ ‘장기간의 심신쇠약’)를 개선(안 제12조제1호)하고, 잘못된 인용 규정을 개정하며(안 제12조제3호, 안 제22조제1항), 법령과 조례 간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안 제1조 등)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2조 다목 등)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조례안 자구 등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1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근거 명확화, 띄어쓰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70P)
2조 다목	-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령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161P)
2조 라목	- 밖에	-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 근거 명확화, 띄어쓰기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70P)
2조 제5호	- 사용가능	- 사용 가능	- 띄어쓰기
제12조 제1호	- 심신장애로 인하여	➔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제12조 제3호	- 제10조제4항에	- 제11조제4항을	- 조문이동
제15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띄어쓰기
제15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 띄어쓰기
제22조 제1항	- 제17조	- 제18조	- 조문이동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는 띄어쓰기, 일상에서 쓰지 않거나, 어려운 말, 조문체계 등을 정비 하는 것인 바, 시민에게 입법 의도를 명확히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제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호)**

- 안 제12조는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신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로서 관련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등의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이를 ‘심신쇠약’으로 개선하려는 것인 바, 인권의 함양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u>제10조제4항에</u> 위반한 경우	3. <u>제11조제4항을</u>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① 「국가인원위원회법」 개정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② ‘자치법규 인권관련 실태조사’(2017년) 및 ③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보임.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장애’라는 문구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과 장애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일반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바, ‘장애’라는 용어의 개정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또는 사회적 인식개선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법령(「민법」, 「형법」 등)에서는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장애(心神障礙), 심신미약/심신박약(心神微弱/心神薄弱) 등 심신(心神)을 마음과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바, 심신장애(心神障礙)는 의사결정 능력 또는 책임능력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 행정안전부 제시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관련 입법 표준안 >

#### 제○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장관(각 부·처·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법제처,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

**IV. 검토**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의견**

-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 건강에 관한 해촉사유로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이 있는 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심신장애'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심신쇠약'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허약해진 상태를 말하므로 심신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고, 위촉된 위원이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입법 표준안 제3호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입법모델과 같이 직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법제처, 2015.12.1., 법령안 심사기준 -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검토, 법제소식 (2015년 12월호, 통권 제43호) p2~13 중 10p 발췌

○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현행 '심신장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와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정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19P)에서는 심신장애를 정신질환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안 제12조 제1호의 수정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신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또한, 안 제12조의 조 제목은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sup>2)</sup>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다. 잘못된 인용규정의 개정(안 제12조제3호, 안 제22조제1항)

- 안 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은 본 조례의 잘못된 인용 규정을 개정 (제10조제4항→제11조제4항, 제17조→제18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2019년 1월4일 본 조례 개정시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규정인 제8조를 신설하면서 뒤로 밀린 조항들의 인용 규정을 미처 정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 시 가지번호를 활용한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오류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8판) 247p 발췌

“중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